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살림집관리법

주체112(2023)년 10월 1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463호로 채택

제 1 장 살림집관리법의 기본

제 1 조 (살림집관리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살림집관리법은 살림집의 인계, 이관인수, 등록, 배정, 관리, 리 용에 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인민들에게 안정되고 문화적인 생활환경과 조건을 보장하 는데 이바지한다.

제 2 조 (살림집의 등록, 관리원칙)

살림집의 인계, 이관인수, 등록, 관리체계를 정연하게 세우는것은 도시와 마을을 아름답게 꾸리며 인민들의 생활상편의를 원만히 보장하는데서 나서는 중요요구이다.

국가는 살림집의 인계, 이관인수, 등록사업에서 과학성과 객관성, 정확성을 보장하고 살림 집의 관리를 책임적으로 하도록 한다.

제 3 조 (살림집의 배정원칙)

살림집의 배정은 인민들의 생활상요구를 원만히 보장해주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다.

국가는 살림집배정에서 인민성의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도록 한다.

제 4 조 (살림집의 리용원칙)

국가는 주민들이 높은 정치의식과 공민적자각을 가지고 살림집과 주변환경을 깨끗이 거두 고 정성껏 관리하면서 새시대의 요구에 맞게 생활습성을 개선해나가도록 한다.

제 5 조 (살림 집관리사업에 대한 지도)

살림집관리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도시 경영지도기관과 지방인 민위원회, 해당 기관이 한다.

중앙도시 경영지도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 해당 기관은 살림집관리사업에 대한 지도체계를 바로세우고 정상적으로 장악지도하여야 한다.

제 6 조 (살림 집관리사업 에 대 한 감독통제)

살림집관리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중앙도시경영지도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 해당 감독 통제기관이 한다.

중앙도시경영지도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살림집의 인계와 이관 인수, 등록과 배정, 관리, 리용정형을 정상적으로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제 7 조 (법의 적용대상)

이 법은 살림집을 인계, 이관인수, 등록, 배정,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적용한다.

제 2 장 살림집의 인계, 이관인수, 등록

제 8 조 (살림집의 인계)

시공주기관, 기업소, 단체는 준공검사에서 합격된 살림집을 살림집 관리기 관에 넘겨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살림집인계문건과 건설명시서, 토지리용허가증, 건설설계 문건, 건설설계예산 서, 준공검사합격통지서, 시공경력서와 같은 문건을 함께 넘겨 주어야 한다.

살림집인계문건에는 승강기, 상하수도, 난방시설, 항공장애물표시등을 비롯한 해당 시설물 관리기 관의 시설물인계합의문건을 첨부하여야 한다.

준공검사에서 합격되지 못하였거나 해당 문건이 없는 경우, 국가가 정한 납부몹을 바치지 않은 경우에는 살림집을 인계할수 없다.

제 9 조 (살림 집의 질보증)

시공주기관, 기업소, 단체는 건설한 살림집에 대하여 정해진 기간까지 그 질을 보증하여야 한다.

살림 집 의 질보증기 간은 준공검 사위 원회 가 정 한다.

살림집의 질보증기간에 제기된 시공상결함은 건설 감독기관과 시공주기관, 기업소, 단체가 책임지고 대책하여야 한다.

제 10 조 (살림집의 이관인수)

살림집관리 기관은 필요한 경우 살림 집을 다른 관리 기관에 넘겨주거나 다른 관리 기관으로 부터 넘겨받을수 있다. 이 경우 승강기, 상하수도, 난방시설, 항공장애물표시등의 기술상태 를 확인하고 살림집이관인수문건을 작성하여 지방인민위원회를 비롯한 해당 기관의 합의, 승 인을 받으며 건설설계문건, 건설설계 예산서, 준공검사합격통지서, 살림집 등록대장을 비롯하여

살림집관리에 필요한 각종 문건을 정확히 넘겨주고 받아야 한다.

기술상태가 불비한 살림집, 해당 문건이 없는 살림집은 넘겨주거나 넘겨받을수 없다.

제 11조 (살림집의 등록)

살림집관리기관은 살림집등록체계를 바로세우고 해당 지역 안의 모든 살림집을 관리단위 별로 빠짐없이 등록하여야 한다.

살림집의 등록은 관리관할에 따라 국가등록과 자체등록으로, 등록시기에 따라 처음등록과 정상등록으로 구분한다.

제 12조 (시설물의 등록)

살림집에 설치된 승강기와 상수도, 난방, 전기, 체신설비를 비롯한 시설은 해당 시설물관리기관이, 하수도와 울타리, 오물장, 공동변소 등은 살림집관리기관이 등록한다.

살림집 관리기관은 해당 시설물관리기관이 등록한 시설에 대하여서도 종합적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제 13조 (살림집의 등록방법과 등록내용)

살림집 관리기관은 살림집등록대장에 해당 내용을 등록하며 정보기술수단을 리용하여 등록 내용을 자료기지화하여야 한다.

등록내용에는 살림집의 등록번호와 준공년도, 형식, 구조, 건평, 능력, 시초가치, 기술상태, 보수정형, 살림집에 설치된 시설과 그 운영상태, 건구, 비품 같은것이 포함된다.

살림집관리기관은 변경된 살림집등록자료를 분기 1차이상 갱신하여야 한다.

제 14조 (살림집의 등록정형보고)

살림집에 대한 통일적인 등록은 중앙도시경영지도기관이 한다.

살림집관리기관은 살림집의 등록정형을 상, 하반기에 1차 해당 지역인민위원회 또는 상급 기관에 보고하며 해당 지역인민위원회 또는 상급기관은 년에 1차 중앙도시경영지도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살림집을 자체로 등록하는 기관은 살림집등록정형을 상급기관에 보고하는것과 함께 해당 지역인민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 3장 살림집의 배정과 리용허가

제 15조 (살림집의 배정기관)

살림집의 배정은 지방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이 한다.

지방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은 살림집을 공정하게 합리적으로 배정하여야 한다.

제 16조 (살림집배정에서 지켜야 할 원칙)

살림집의 배정에서 지켜야 할 원칙은 다음과 같다.

1. 혁명렬사가족, 애국렬사가족, 전사자가족, 피살자가족, 영웅, 전쟁로병, 영예 군인, 제대군관, 교원, 과학자, 기술자, 근로자, 로력혁신자, 세쌍둥이세대, 다자녀세대 같은 대상에게 살림집을 우선적으로 배정하여야 한다.
2. 탄부, 광부, 용해공, 먼바다어로공, 철도기관사 같은 힘든 부문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 문화적 이고 충분한 휴식조건이 보장된 살림집을 배정하여야 한다.
3. 자연재해로 집을 잃은 세대, 국가적조치로 철거된 세대에 살림집을 의무적으로 배정하여야 한다.
4. 가족수와 출퇴근조건, 거주조건, 신체조건 같은것을 고려하여 살림 집을 배정 하여야 한다.
5. 국가가 농장에 지어준 살림집과 협동단체소유의 살림집은 농장에 직접 복무하는 농장원, 협동단체에 소속된 로동자, 사무원에게 배정하여야 한다.
6. 결혼전 독신자, 해당 지역에 거주할수 없는 공민에게는 살림집을 배정하지 말아야 한다.

제 17조 (살림집배정신청 및 등록)

살림집을 보장받으려는 공민은 지방인민위원회 또는 해당 기관에 살림 집배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살림집배정신청을 받은 지방인민위원회 또는 해당 기관은 그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료해하고 살림 집배정신청등록대장에 등록하며 살림 집 이 마련되는데 따라 책임적으로 보장해주어야 한다.

제 18조 (배정할수 있는 살림집)

새로 건설한 살림집은 준공검사에서 합격되고 살림집관리기관에 등록되어야 배정할수 있으며 공공건물, 산업건물을 용도변경한 살림집은 정해진 승인절차를 거쳐 살림집관리기관에 등록 되어야 배 정 할수 있다.

이미 리용하던 살림집은 그것을 리용하던 공민이 살지 않을 경우에 배정할수 있다.

준공검사에서 합격되지 못하였거나 정해진 승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용도변경하였거나 살림 집 관리기관에 등록하지 않은 살림집, 이미 리용하고있는 살림집은 배정할수 없다.

제 19조 (살림집의 교환)

공민은 출퇴근조건, 가족수 등 필요한 경우 살림집을 교환할수 있다. 이 경우 지방인민위원회 또는 해당 기관에 살림집교환신청을 하여야 한다.

지방인민위원회 또는 해당 기관은 살림집교환신청을 받은 경우 교환조건을 정확히 검토하고 승인하여야 한다.

살림집교환조건이 부당한 경우에는 살림집을 교환할수 없다.

제 20조 (살림집의 동거)

공민은 살림 집리용자와 합의하고 동거살림을 할수 있다. 이 경우 지방인민위원회 또는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21조 (살림 집의 리용허가)

지방인민위원회 또는 해당 기관은 살림집을 배정받았거나 교환, 동거승인을 받은 공민에게 살림 집 리용허가증 또는 동거살림 집 리용허가증을 발급해주어야 한다.

살림집리용허가증 또는 동거살림집리용허가증의 형식과 내용은 중앙도시경영 지도기관이 정한다.

살림집리용허가증을 이중으로 발급할수 없다.

제 22조 (배정, 리용허가에서 금지사항)

살림집의 배정, 리용허가에서 금지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준공검사에서 합격되지 못하였거나 살림집관리기관에 등록되지 않은 살림집을 배정하는 행위
2. 살림집을 이중으로 배정하는 행위
3. 비 법 적으로 살림 집 리용허 가증을 발급하거나 살림 집 리용허 가증이 없이 살림 집 에 입사시키는 행위
4. 리기적목적 또는 기타 부당한 목적으로 살림집교환을 승인하는 행위

5. 한 세대에 2개이상의 살림집을 배정 또는 리용허가하는 행위

제 23조 (살림집배정, 리용허가정형에 대한 보고)

지방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은 살림집의 배정 정형과 리용허가정형을 중앙도시 경영지도기관에 상, 하반년에 1차씩 보고하여야 한다.

제 4 장 살림집의 리용

제 24조 (살림 집 입사)

살림집리용허가를 받은 공민은 해당한 수속을 하고 제때에 살림집에 입사하여야 한다.

정당한 리유없이 3개월안으로 배정받은 살림집에 입사하지 않을 경우에는 살림 집리용허가를 취소한다.

제 25조 (살림집과 그 주변의 청소 및 꾸리기)

공민은 살림집안팎을 정상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살림집과 복도, 마당, 구획놀이터 등 공동구간에 대한 청소를 정상적으로 진행하며 언제나 깨끗이 거두어야 한다.

농촌살림집은 설치된 울타리와 집짐승우리, 창고, 위생실 같은것을 알뜰하게 꾸리고 관리 하며 주변에 과일나무와 수종이 좋은 나무를 심고 생땅이 드러나지 않게 록지를 조성하여야 한다.

제 26조 (살림 집의 현판, 문패)

동사무소와 인민반은 다층살림집과 단층살림집구역의 일정한 곳에 구역, 동, 호동, 현관, 인민반을 밝힌 현판을 달아야 한다.

공민은 살림집의 출입문 또는 대문에 문패를 달아야 한다.

살림집의 현판과 문패의 규격은 국가규격제정기관에서 정한데 따른다.

제 27조 (사용료의 지불)

살림집을 배정받아 리용하는 공민은 살림집사용료를 살림집관리기관에 내야 한다.

살림 집사용료를 정하는 사업은 중앙가격 지도기관이 한다.

제 28조 (이사하는 살림 집의 인계)

이사하는 공민은 리용하던 살림집을 해당 살림집관리기관에 정확히 넘겨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살림집에 설치된 시설과 등록된 건구, 비품 같은것을 원상대로 넘겨주어야 한다.

살림집관리기관은 이사하는 공민으로부터 살림집과 그에 설치된 시설, 등록된 건구, 비품 같은것의 상태를 정확히 확인하고 넘겨받으며 떼갔거나 파손시켰을 경우에는 원상대로 해놓도록 한 다음 넘겨받아야 한다.

제 29조 (살림 집 리용허가증의 보관, 반환)

공민은 살림집 리용허가증의 보관을 잘하여 분실하거나 오손시키지 말아야 한다.

살림 집 리용허가증을 분실, 오손시켰을 경우에는 살림 집관리 기관의 리용자확인을 받아 지방 인민위원회 또는 해당 기관에 재발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한 요금을 물어야 한다.

이사하는 공민은 이미 리용하던 살림 집의 리용허가증을 살림 집관리 기관의 살림 집 인계확인을 받아 지방인민위원회 또는 해당 기관에 바치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새 살림집리용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제 30조 (이상현상에 대한 통보)

공민은 살림집이 기울어지거나 벽체와 층막에 금이 가는 현상, 비가 새거나 상하수도, 난 방관에서 물이 새는 현상, 살림집안에서 집짐승을 기르는 현상을 비롯하여 건물을 부식 및 파손시킬수 있는 현상을 발견하면 즉시 살림집관리기관과 해당 기관에 알려야 한다.

통보를 받은 기관은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제때에 대책하여야 한다.

제 31조 (살림 집 리용에서 금지사항)

살림집리용에서 금지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살림집리용허가증이 없이 살림집에 입사하는 행위
2. 리 기적목적 또는 기 타 부당한 목적으로 살림 집을 교환하는 행위
3. 돈, 물건을 받거나 부당한 요구조건을 걸고 살림집에 동거시키는 행위
4. 살림집을 팔고사거나 거간하는 행위
5. 살림집을 비법적으로 다른 공민에게 빌려주는 행위
6. 한 세대가 둘이상의 살림집을 리용하는 행위
7. 비법적으로 둘이상의 살림집을 하나로 만들어 리용하는 행위

8. 살림집을 비법적으로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행위
9. 살림집리용허가증을 이중으로 발급받는 행위
10. 승인없이 살림집을 증축, 개축, 이개축, 확장하거나 살림집의 구조를 변경하는 행위
11. 살림집에 설치된 시설과 등록된 건구, 비품을 파손시키거나 떼가는 행위
12. 살림방에서 집짐승을 기르는것을 비롯하여 살림집을 용도에 맞지 않게 리용하는 행위
13. 살림집으로 리용하지 못하게 된 장소에 비법적으로 들어가 사는 행위
14. 이사하면서 살림집을 살림집관리기관에 인계하지 않는 행위
15. 살림집 또는 그 지하에 충격, 진동을 일으킬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고 운영 하거나 승인 없이 살림집가까이에서 폭발물을 터치는것 같은 행위
16. 담장 또는 울타리를 높게 치거나 터발을 정해진 면적보다 더 늘이는 행위
17. 살림집구획에서 유해곤충이 서식할수 있는 근원을 조성하거나 도시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
18. 그밖에 살림집의 수명과 관리, 도시미화에 지장을 주는 행위

제 5 장 살림집의 관리

제 32조 (살림집관리체계확립)

살림 집관리 기관은 살림 집관리 체계를 정 연하게 세우고 살림 집유지 보수를 계 획적으로, 과학 기술적으로 하여야 한다.

살림집관리기관은 살림집과 그 주변을 언제나 위생문화적으로 관리하며 살림집의 수명을 늘이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제 33조 (살림집관리원의 배치)

살림집관리기관은 동, 인민반별로 살림집관리구역을 정하고 지구별로 담당관리원을 배치하 여야 한다.

담당관리원은 순회점검일지를 갖추고 담당한 지역의 살림집관리정형을 정상적으로 조사기 록 하며 이상현상이 나타났을 경우에는 제때에 해당하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

제 34조 (살림집의 기술감정)

살림집관리기관은 살림집의 보수를 위하여 정해진 기준에 따라 살림집에 대한 기술감정을 하여야 한다.

살림집의 기술감정과 관련한 기준은 중앙건설감독지도기관과 중앙도시경영 지도기관이 정한다.

제 35조 (살림 집의 보수주기)

살림 집관리 기관은 살림 집보수주기를 엄격히 지켜야 한다.

살림 집보수주기를 정하는 사업은 중앙도시경영 지도기관이 한다.

제 36조 (살림 집의 보수계획)

살림집관리기관은 기술감정결과에 따라 보수계획을 현실성있게 세우고 어김없이 집행하여야 한다.

살림집의 보수계획은 해당 상급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37조 (살림 집보수설계의 보장)

살림집의 보수는 살림집보수설계에 따라 한다.

해당 설계기관은 현실적이며 과학적인 살림집보수설계를 작성하여 보수에 앞세워 보장하여야 한다.

살림 집관리 기관은 살림 집보수설계작성 에 필요한 기술과제를 제때 에 보장하여야 한다.

제 38조 (살림집의 도색)

살림 집의 도색은 살림 집관리 기관과 공민이 한다.

다층살림 집 의 바깥면에 대 한 도색은 살림 집관리 기관이 , 다층살림 집 의 안쪽면과 단층살림 집 의 도색은 살림집을 리용하는 공민이 한다.

제 39조 (살림 집의 보호)

살림집관리기관과 해당 기관은 소화시설, 피뢰시설, 항공장애물표시등과 같은 살림집의 안전 보장을 위한 시설을 늘 정비하여 각종 사고로부터 살림집을 보호 하여야 한다.

제40조 (살림 집 밖의 시설물설치, 철수)

살림집우나 벽체에 선전용, 장식용시설, 통신시설 등을 설치하려는 경우 살림집 관리기관 과 합 의하여야 한다.

살림집에 설치하였던 시설물을 철수하였을 경우에는 살림집상태를 원상대로 해놓아야 한다.

살림집의 안전에 영향을 주거나 도시미화에 지장을 줄수 있는 시설물은 설치할수 없다.

제41조 (살림집안의 시설물보수정비 및 운영)

살림집관리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는 상하수도, 난방, 전기, 통신, 유선방송, 승강기, 수채시설 같은것을 정상적으로 보수정비하고 운영하여 주민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살림집에 상하수도, 난방, 전기, 통신, 유선방송, 승강기, 수채시설 같은것을 설치하거나 보수 또는 철수하려 할 경우에는 살림집관리기관과 합의하며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보수 또는 철수하면서 건물의 파괴된 부분을 원상대로 해놓아야 한다.

제 42조 (살림집의 철거)

기관, 기업소, 단체는 이미 리용하고있는 살림집을 철거시키려는 경우 철거세대들에 대한 생활조건보장대책을 세운 조건에서 살림집관리기관과 합의하고 중앙도시경영지도기관 또는 해당 인민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살림집관리기관, 중앙도시경영지도기관 또는 해당 인민위원회의 합의, 승인이 없이는 살림집을 철거할수 없다.

제43조 (살림집철거통지서의 발급)

살림집관리기관과 해당 기관은 살림집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주민세대에 살림집 철거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살림집철거통지서양식은 중앙도시경영지도기관이 정한다.

살림집철거통지서가 없는 세대는 철거세대에 해당하는 살림집을 배정받을수 없다.

제44조 (살림집의 복구, 개축, 이개축, 증축, 확장)

살림집의 복구, 개축, 이개축, 증축, 확장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살림집관리 기관 또는 중앙도시경영지도기관의 합의와 해당 건설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아 한다.

개별적인 단층살림집을 복구 또는 개축하거나 정해진 면적을 확장하려고 할 때에는 지방인민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한다.

제45조 (살림집의 구조, 용도변경승인)

살림집의 구조변경승인은 지방인민위원회 또는 해당 기관이 하며 용도변경승인은 중앙도시경

영지도기관이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의 건물기술감정을 사전에 받아야 한다.

살림집의 지지구조는 변경할수 없다.

제 46 조 (도시미화의 날 운영)

중앙도시경 영 지도기관과 지 방인민위 원회 , 해 당 기관은 해마다 4월과 10월 〈 〈도시미화월 간〉 〉 과 매월 첫주 일요일 〈 〈도시미화의 날〉 〉 에 살림집과 그 주변을 위생 문화적으로 알 락히 꾸 리기 위한 사업을 전군중적인 사업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살림집관리기관과 공민은 살림집과 그 주변을 꾸리는 사업에 적극 참가하여야 한다.

제47조 (살림집관리사업조건의 보장)

국가계 획 기 관과 로동행 정기 관, 자재 공급기관, 재 정은행 기 관, 지 방인민위 원회 , 해 당 기 관, 기업소, 단체는 살림집 관리부문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며 살림집 관리에 필요한 로력과 자재 , 자금, 설 비보장계 획을 현실성있게 세우고 우선적으로 보장하여 야 한다.

살림집관리부문의 로력과 자재, 자금, 설비는 다른데 돌려쓸수 없다.

제48조 (살림집관리부문의 교육, 과학연구사업)

살림집관리부문의 교육기관과 과학연구기관, 해당 기관은 살림집관리사업에 필요한 기술자, 전문가들을 체계적으로 전망성있게 키워내며 살림집관리사업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원만히 풀어나가야 한다.

제 6 장 법적 책임

제 49 조 (중지 처 벌)

비법적으로 살림집을 구조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정해진 질서를 어기고 살림집을 리용하거나 승인없이 살림집지하층을 리용할 경우에는 그것을 중지시킨다.

제 50조 (원상복구, 변상처벌)

승인없이 살림집의 구조 또는 용도를 변경시켰거나 살림집에 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된 시설을 보수하면서 벽체나 지붕, 층막 같은것을 파손시켰을 경우, 담장 또는 울타리를 높게 치거나 터밭을 정해진 면적보다 더 늘인 경우에는 원상복구 시키며 살림집에 설치된 시설과 등록된 건물, 비품 같은것을 떼거나 파손시켰을 경우에는 변상시킨다.

제 51조 (몰수처벌)

다음의 경우에는 살림집과 설비를 몰수한다.

1. 돈벌이를 목적으로 살림집을 팔고샀을 경우
2. 둘이상의 살림집을 하나로 만들어 리용하거나 한 세대가 둘이상의 살림집을 리용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살림집만 두고 나머지 살림 집은 몰수한다.
3. 살림집 또는 지하에 충격, 진동을 일으킬수 있는 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것을 몰수 한다.
4. 살림집을 교환하거나 빌려주거나 살림집에 동거시키면서 받은 돈이나 물건은 몰수한다.
5. 살림집의 팔고사기를 거간하면서 받은 돈이나 물건은 몰수한다.

제 52조 (벌금처벌)

다음의 경우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에 10만~150만원, 개별적공민에게 1 000~ 1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1. 비법적으로 살림집을 교환해주었을 경우
2. 살림집리용허가증이 없이 살림집에 입사한 경우
3. 비법적으로 살림집에 동거시킨 경우
4. 부당한 목적으로 살림집을 빌려준 경우
5. 살림집리용허가증을 이중으로 발급하였을 경우
6. 이사를 가면서 살림집을 살림집관리기관에 정확히 인계하지 않았을 경우
7. 살림집 또는 그 지하에서 충격, 진동을 일으킬수 있는 설비를 가동시켰을 경우
8. 담장 또는 울타리를 높게 치거나 터밭을 정해진 면적보다 더 늘였을 경우
9. 살림집보수를 제때에 하지 않을 경우
10. 승인없이 살림집을 철거시켰을 경우
11. 생활상조건을 내세우면서 살림집을 팔고샀을 경우
12. 그밖에 살림집의 수명과 관리, 도시미화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제 53조 (경고, 엄중경고처벌)

다음의 경우에는 책임있는자에게 경고처벌을 준다.

1. 준공검사에서 합격되지 못하였거나 살림집관리기관에 등록되지 않은 살림집을 배정하였을 경우
2. 살림집리용허가증발급질서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3. 살림집등록사업을 바로하지 않았을 경우
4. 살림집보수계획을 세우지 않았거나 제때에 집행하지 않았을 경우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엄중경고처벌을 준다.

제 54조 (무보수로동, 로동교양)

다음의 경우에는 책임있는자에게 3개월 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1. 살림집배정 및 리용허가질서를 어겨 사회적물의를 일으켰을 경우
2. 살림집보수질서를 어겨 사회적물의를 일으켰을 경우
3. 살림집을 비법적으로 교환해주었을 경우
4. 돈벌이를 목적으로 살림집을 팔고샀을 경우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제 55조 (강직, 해임, 철직처벌)

살림집관리질서를 어겨 엄중한 결과를 발생시켰을 경우에는 책임있는자에게 정상에 따라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제 56조 (형사적책임)

이 법을 어긴 행위가 범죄에 이를 경우에는 책임있는자에게 형법의 해당 조항에 따라 형사적 책임을 지운다.